「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발의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발 의 자**: 박윤경 의원 외 1인
3. **찬 성 자**: 강승수·김영태·김재우·김정도·김종화·김지식·김춘남·유승헌·이탕모·장진호·전희정 의원(11인)
4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5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박 윤 경 의원

2. 제안이유

○ 구미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,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～제4조)

다.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～제6조)

라.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기　　타: 조례안 예고(2026.10.7. ~ 10.12.) 결과 의견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생활안전과 교통안전, 여성·청소년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치안 분야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구미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과 치안 수요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고, 범죄 취약지역의 예방시설 확충과 여성·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